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기본서 추록>

[p.13] 3번째 단락 <오타수정>

개인 상인의 등기기록은 ① 상호폐지의 등기, ② 상호의 말소등기, ③ 무능력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

->

개인 상인의 등기기록은 ① 상호폐지의 등기, ② 상호의 말소등기, ③ 미성년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

[p.16]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776호 -> 1825호

[p.17]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776호 -> 1825호

등기예규 1774호 -> 1806호

[p.18]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776호 -> 1825호

등기예규 1774호 -> 1806호

등기예규 1546호 -> 1829호

<2. 발급신청 중 2번째 단락 말미>

(등기예규 1522호 참조~~ -> (등기예규 1522호(구 예규) 참조~~

[p.19]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774호 -> 1806호

<박스안>

개정 2023.10.13. [등기예규 1776호]

-> 개정 2025.01.03. [등기예규 1825호, 시행 2025.01.31.]

[p.23] <다. 등기기록의 열람 중>

1)~. 이하 이 '나.'에서~ -> ~. 이하 이 '다.'에서~

<신설>

->

3)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이하“이미지폐쇄등기부”라 한다)의 열람은 컴퓨터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방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면으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형태의 열람만 가능하며, 출력하는 서면에는 열람용임이 표시된다.

4) 3)의 경우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할 수 있다.

[p.26]

<(2). 예 외 중>

(다)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 (다) 삭제 (2025.01.03.제1825호)

<다.-(1) 유인발급의 경우 중>

(가)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게 하고 인감카드 비밀번호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또는 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공개되는 입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구두나 메모형식으로 이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가)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인감카드를 제시하게 하고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공개되는 입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구두나 메모형식으로 이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p.27]

(2)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여 인감카드 비밀번호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3)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열람 포함)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직접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4) 보안토큰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의 발급기능 제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2)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인감카드를 사용하여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3)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열람 포함)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직접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4) 삭제(2025.01.03. 제1825호)

[p.28]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774호 -> 1806호

<내용변경>

(2) 종이 폐쇄등기부의 열람(등기예규 1776호 7.)

종이 폐쇄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폐쇄등기부 열람신청서(등기예규 1776호 별지 4호 양식)를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열람은 관할등기소 외에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2) 종이 폐쇄등기부의 열람

종이 폐쇄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폐쇄등기부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1825호 7. 본문).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이하 ‘이미지폐쇄등기부’라 함)의 열람은 관할등기소 외에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고(동 예규 7. 단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다(동 예규 5. 나. 3); 이 경우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형태의 열람만 가능하며, 출력하는 서면에는 열람용임이 표시된다).

[p.29] <박스 안>

개정 2023.10.13 등기예규 제1774호]

-> 개정 2024.12.30. [등기예규 제1806호, 시행 2025.01.31.]

[p.30] <박스 안>

<1번째 줄>

제27조 및 제28조, ~ ->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 ~

<4번째 줄>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등 ~ ->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및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등 ~

<2번째 단락>

제2조(서비스의 종류 및 열람 등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1호,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또는 제10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등기기록 열람: 민원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다.
-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민원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중간생략>

10.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예약 등: 민원인은 이미지폐쇄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영구보존문서에 대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

제2조(서비스의 종류 및 열람 등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의1호, 제3호, 제4호, 제7호, 제9호, 제9의1호, 제10호, 제12호와 제3항 제2호(재발급의 경우에 한함) 및 제3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1. 등기기록 열람: 민원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다.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 또는 공장저당목록에 대한 열람은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민원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이미지폐쇄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함)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중간생략>

9의1.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민원인은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 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입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0.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예약 등: 민원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미지폐쇄등기부 또는 영구보존문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지폐쇄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영구보존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11. 전자증명서 발급: 민원인은 「상업등기규칙」 제46조 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12. 신청서 및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민원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p.31]

<2번째 줄 삽입>

->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1항 제1호(이미지폐쇄등기부 및 영구보존문서의 열람은 제외함), 제2의1호, 제3호, 제6호, 제8호의 서비스
- 2.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 의 보안매체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번호를 생성하는 모바일 OTP 발급 및 재발급
- 3.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예약(이하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이라 함)

<제5조 각 항 중>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신청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신청은 ~

->

②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신청과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신청은 ~

⑥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의 결제, 예금계좌의 이체, 전자화폐의 결제 등으로 수수료의 결제가 끝난 경우에는 그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신청은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에도 철회할 수 없다.

->

⑥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의 결제, 예금계좌의 이체, 전자화폐의 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신청은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인 경우에도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

⑧~~ “등기포탈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

->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

제7조(인터넷 열람등에 관한 업무수행기관의 지정) 인터넷 열람 등에 관한 업무는 법원 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수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수납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수행한다.

->

제7조 (인터넷 열람등에 관한 업무수행기관의 지정) 인터넷 열람 등에 관한 업무(신청서 및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업무는 제외함)는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수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수납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수행한다.

<제9조(열람의 종류) 중>

2.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 부동산등기부의 경우에는 특정인·지분·현제소유현황·지분취득이력, 법인등기부의 경우에는 임원란·지배인란·지점란 등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볼 수 있다.

->

2.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 : 부동산등기부의 경우에는 특정인·지분·현제소유현황·지분취득이력, 법인등기부의 경우에는 임원란·지배인란·지점란 등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의 경우에는 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의5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소재지, 공개를 원하는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호, 공개를 원하는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예약을 한 신청인은 예약 당시 부여받은 발급번호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무인발급기 화면에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은 1등기기록에 대하여 1통만 예약할 수 있다.

제14조의2조 ~~~ ① ~ 상등기규칙 제46조 제4항의 ~~

-> 제14조의2조 ~~~ ① ~ 상등기규칙 제46조 제5항의 ~~

제14조의4조(발급예약절차) ① 부동산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예약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공개를 원하는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단, 발급 가능 시간을 통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인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예약을 하려는 자는 상호, 공개를 원하는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단, 발급 가능 시간을 통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의4 (발급예약절차) ① 부동산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예약을 통해 신청인이 사전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소재지, 공개를 원하는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단, 발급 가능 시간을 통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인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예약을 통해 신청인이 사전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상호, 공개를 원하는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단, 발급 가능 시간을 통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조(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기록 열람 및 영구보존문서의 발급예약) 전 제14조의4조, 제14조의5조의 규정은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기록의 열람예약 및 영구보존문서 발급예약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4조의6 (이미지폐쇄등기부 등의 열람 및 영구보존문서 발급예약) ①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의 규정은 매매목록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공동담보목록을 제외한 영구보존문서(이하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된 영구보존문서'라 함)에 대한 발급예약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이미지폐쇄등기부 및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된 영구보존문서의 열람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다.(2) 및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8.나.(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공시제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된 영구보존문서가 포함된 등기기록의 열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공시제한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그 열람이 가능하다.

제15조(수수료액 등)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 정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②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수수료액 등)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 정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②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36]

제16조(수수료 납부절차) <중간생략>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신청시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6조(수수료 납부절차) <중간생략>

② 무인발급기 발급예약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신청시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p.37]

제19조의2(무인발급기 발급수수료의 수납 등)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를 이용하여 발급수수료의 납부가 가능한 무인발급기의 수수료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의2 (무인발급기 발급수수료의 수납 등) 무인발급기 발급예약과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의 수수료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37]

제20조(통계의 특칙) ① 인터넷에 의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과 통계처리는 예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통계 및 수수료 통계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처리한다.

③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따른 열람 및 발급통계와 수수료 통계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처리한다.

->

제20조 (통계의 특칙) ① 인터넷에 의한 무인발급기 발급예약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과 통계처리 는 예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무인발급기 발급예약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통계 및 수수료 통계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처리한다.

③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따른 열람 및 발급통계와 수수료 통계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처리한다.

[p38]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776호 -> 1825호

<2. 예 외 중>

③ 전자증명서(단, 보안토른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는 제외)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 <삭제>

④ -> ③

⑤ -> ④

⑥ 지배인(대리인)이 ①~③의 방법으로 -> ⑤ 지배인(대리인)이 ①~②의 방법으로

[p.40]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776호 -> 1825호

1. 유인창구를 이용하는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게 하고 인감카드 비밀번호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

->

1. 유인창구를 이용하는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게 하고 인감카드 비밀번호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

2.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여 인감카드 비밀번호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

->

2.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여 인감카드 비밀번호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

[p.41]

3.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열람 포함)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직접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

3.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열람 포함)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직접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4. 보안토큰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의 발급기능 제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4. 전자증명서의 발급기능 제외

전자증명서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p.42]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768호 -> 1832호

[p.43]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768호 -> 1832호

등기예규 1774호 -> 1806호

[p.44]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768호 -> 1832호

[p.45]

<2번째 단락>

상업등기규칙 68조 2항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1709호)' 4조의2에 따라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재택창업시스템'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한 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등기예규 1768호 16조 1항 단서).

->

상업등기규칙 68조 2항 및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1855-1호)' 5조에 따라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재택창업시스템'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한 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등기예규 1832호 16조 1항 단서).

[p.47]

<4.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중 2번째 단락>

발급증을 제출받은 지정 행정기관등은 해당 발급증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발급시스템에 입력하여 그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상등규 42조의3 2항).

->

발급증을 제출받은 지정 행정기관등은 해당 발급증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발급시스템에 입력하여 그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상등규 42조의3 2항). 지정행정기관 등이 전자인감증명서를 1회 열람하면 전자인감증명서는 사용된 것으로 본다(등기예규 1832호 38조 3항).

[p.57]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659호 -> 1792호

[p.58]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659호 -> 1792호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609호 -> 1780호

[p.84]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768호 -> 1832호

<박스 안>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06.09. [등기예규 제1768호]
->
인감의 제출·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5.01.24. [등기예규 제1832호, 시행 2025.01.31.]

[p.88] <표 수정>
<박스안. 주.>

신고인 본인 성명 #
 대리인 성명 (인) (전화:)
->
신고인 본인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전화:)

4.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을 신고하거나 개인(改印)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1. 대신에 아래 위임장의 신고인 날인란(※)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4.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을 신고하거나 개인(改印)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1. 대신에 위임인의 날인란(**)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고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하단. 위임장>
인감(개인) 신고인 성명 ※
->
인감(개인) 신고인 성명 (인)**

[p.90]

<3번째 단락>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이때 함께 송신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정보는 ①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17조의 전자증명서(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입을 확인하는 보안매체[일회용비밀번호(OTP)] 등의 추가인 증수단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여야 함; 추가인증수단에 관한 규정은 2025. 8. 1.부터 시행) 를 송신하고, ② 개인인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2조 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공동인증서 등]를 송신하 고, ③ 관공서인 경우에는 대법원에규로 정하는 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상등규 67조 4 항).

->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이때 함께 송신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정보는 ①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17조의 전자증명서 및 추가인증 수단인 보안매체[일회용비밀번호(OTP)]의 인증번호를 송신하고(이 때 OTP 추가인증은 ㉠ 신청인이 신청정보 또는 취하정보를 송 신하는 경우,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송신하는 경 우(일부 예외 있음), ㉢ 인감의 제출또는 변경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필요함; 추가인증수단에 관한 규정은 2025. 8. 1.부터 시행), ② 개인인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2조 6 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 하는 인증서[공동인증서 등]를 송신하고, ③ 관공서인 경우에는 대법원에규로 정하는 인증 서(행정전자서명)를 송신하여야 한다(상등규 67조 4항).

[p.94]

<1번째 단락. 추가>

~~ 변경이나 경정등기에 대한 위임장은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

->

~~ 변경이나 경정등기에 대한 위임장은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 대한 위임인의 전자서명은 필요하지 않 다.

<5번째 단락>

㉠ 공증인법 66조의6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 자체로 송신한다.

->

㉡ 공증인법 66조의6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화문서(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 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전자화문서’ 라 함)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 자체로 송신한다.

[p.94]

<2. 전자서명정보의 송신 / ① 법인>

① 법인 : 상업등기법 17조의 전자증명서(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하여는 대법 원에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입을 확인하는 보안매체[일회용비밀번호(OTP)] 등의 추 가인증수단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여야 함; 추가인증수단에 관한 규정은 2025. 8. 1.부터 시 행)를 송신

->

① 법인 : 상업등기법 17조의 전자증명서 및 추가인증 수단인 보안매체[일회용비밀번호 (OTP)]의 인증번호를 송신(이 때 OTP 추가인증은 ㉠ 신청인이 신청정보 또는 취하정보를 송신하는 경우,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일부 예외 있음), ㉢ 인감의 제출또는 변경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필요 함; 추가인증수단에 관한 규정은 2025. 8. 1.부터 시행)

[p.105]

<각주의 예규 번호 변경>

등기예규 1709호 -> 1855-1호

[p.106]

<박스 안>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1.31.부터 시행]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08.01.부터 시행]

<금액 변경>

30,000원 -> 35,000원

6,000원 -> 7,000원

[p.112]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768호 -> 1832호

[p.115]

<3번째 단락>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에 정관 등에서 대표권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각 대표자는 등기신청을 취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에 정관 등에서 대표권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각 대표자는 등기신청을 취할 수 있다(신청한 대표가 아닌 대표 즉, '등기미신청 각자 대표'도 취할 수 있음; 등기예규 1822호 2조 2항).

<2. 등기신청 취하의 방식 / ② 중 6번째 줄>

~~ 전자신청을 한 대표자가 아닌 다른 대표자가 취하하는 경우에는 ~~

->

~~ 전자신청을 한 대표자가 아닌 다른 대표자(등기미신청 각자 대표)가 취하하는 경우에는 ~~

[p.116]

<2번째 단락.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709호 16조 2항 -> 1855-1호 19조 2항

[p.129]

<마지막 단락>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등규 170조 1항. 회복사항 없음). 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경우와 자점소재지 등기소에서 본점소재지 등기소의 통지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상등규 170조 3항).

-> 마지막 2줄 삭제

[p.132]

<II. / 2번째 단락.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689호 -> 1812호

[p.133]

<I. / 2번째, 3번째 단락>

이의신청은 ① 관할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상등 83조; 2025. 1. 31.부터 시행).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정보를 작성하고 이의 신청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상등규 171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이의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예규 1689호 1조 3항).

->

이의신청은 ① 관할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상등 83조; 2025. 1. 31.부터 시행).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정보를 작성하고 이의 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인증서등)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상등규 171조 2항; 등기예규 1812호 1조 3항; 2025. 1. 31.부터 시행).

이의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예규 1812호 1조 4항).

<II.-1.-(1) / 2번째 단락>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상등 85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상등 85조 2항; 2025. 1. 31.부터 시행). 구체적으로는 이의신청정보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되, 전산장애 등의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등기예규 1812호 4조).

[p.134]

<아래에서 2번째 단락.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689호 -> 1812호

[p.135]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689호 -> 1812호

등기예규 1776호 -> 1825호

등기예규 1768호 -> 1832호

[p.136]

<1번째 단락,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689호 -> 1812호

[p.143]

<박스안>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7호, 시행 2014.11.21]

->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 2025.01.02 [등기예규 제1819호, 시행 2025.01.31]

[p.144]

<제4조-①-5.>

5.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본점을 이전하는 회사의 지점 등기가 당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아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내용 전부 삭제

<제4조-②>

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2025. 1. 31.부터 시행)

->

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2025. 1. 31.부터 시행)

[p.145]

<제8조-1.>

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제9조-①>

① 목적(본 절에서 ~~

-> ① 목적(본 절에서 ~~

[p.146]

<박스안> 부칙 삭제

[p.149]

<IV.-1. /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659호 -> 1792호

[p.225]

| |
|---|
| 지배인에 관한 사항 |
| 1. 지배인 ○○○ (880111-1234567) 서울특별시 도봉구 ○○길 ○ (쌍문동)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 ○층(역삼동) (강남지점) |

->

| |
|---|
| 지배인에 관한 사항 |
| 1. 지배인 ○○○ (880111-1234567) 서울특별시 도봉구 ○○길 ○ (쌍문동)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 ○층(역삼동) (강남지점) |
| 1. 지배인 △△△ (9212121-1234567) 부산광역시 기장구 ○○로 ○ (○○동) 지배인을 둔 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 ○층(우동) (해운대지점) |

| | | |
|---------|-------------|----|
| 회사성립연월일 | 20○○년 ○월 ○일 | 등기 |
|---------|-------------|----|

->

| | | |
|---------|-------------|----|
| 회사성립연월일 | 20○○년 ○월 ○일 | 설립 |
|---------|-------------|----|

[p.234]

<7. /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768호 -> 1832호

[p.236]

| |
|--|
| 기 타 사 항 |
| 1. 본점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본점이전등기 20○○년 ○월 ○일 등기 |

->

| |
|--|
| 기 타 사 항 |
| 1. 본점이전 20○○년 ○월 ○일 본점이전 상업등기법 제4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 20○○년 ○월 ○일 등기 |

[p.241]

<1. / 3번째 단락 /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547호 -> 1819호

[p.243]

<각주>

1) '사내이사'란 회사의 업무를 상시 집행하는 자이고, 그에 대비하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비상무이사)로서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가 있는 구조이다.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중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기타비상무이사'가 된다.
->

1) '사내이사'란 회사의 업무를 상시 집행하는 자이고, 그에 대비하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비상무이사)로서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가 있는 구조이다.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중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기타비상무이사'가 된다.
한편, 상장회사는 '독립이사(상법 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이사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 선임하여야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상 542조의8; 2026. 7. 23.부터 시행).

[p.244]

<(2)-1>>

1) 사외이사는 일정한 자격을 요한다(상 382조 3항, 542조의8 2항).
->

1) 사외이사(상 382조 3항) 및 상장회사의 독립이사(상 542조의8 2항; 2026. 7.23.부터 시행)는 일정한 자격을 요한다.

<(2)-3>

3)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

->

3)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

[p.245]

<(3) / 2번째 단락>

원칙적으로 사외이사의 선임은 강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하고,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상 542조의8 1항; 상법시행령 34조).
->

원칙적으로 사외이사의 선임은 강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독립이사(상법 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이사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하여야 하고,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상 542조의8 1항; 상법시행령 34조; 2026. 7. 23.부터 시행).

[p.248]

<2번째 단락>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상 415조의2 4항). 한편,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상 542조의11 1항, 2항; 상법시행령 37조 1항 본문).
->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상 415조의2 4항). 한편,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상 542조의11 1항, 2항; 상법시행령 37조 1항 본문; 2026. 7. 23.부터 시행).

<(나) 자격 / 2번째 단락>

다만,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이 아니어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이 있다(상 542조의11 3항).

->

다만,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이 아니어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이 있다(상 542조의11 3항).

[p.264~265]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768호 -> 1832호

[p.358]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09.16 [등기예규 제1706호, 시행 2020.10.01]

->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5.01.03 [등기예규 제1824호, 시행 2025.01.31]

<제2조 - ②>

② 제1항의 해당 등기기록의 선별은 법인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저자 주석 : 2025. 1. 31. 부터 시행 예상; 예규 개정안 확정 전>

->

② 제1항의 해당 등기기록의 선별은 법인을 단위로 하여야 하고, 본점(이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지점(이하 “지사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전체 등기사항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법인의 등기기록은 선별대상인 등기기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제4조 - ③>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제2조 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제2조 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p.359]

<제5조 - ③>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취지를 보통우편으로 통지(별지 제4호 양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통지는 신고인의 신고서상 주소지로 한다.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취지를 보통우편으로 통지(별지 제4호 양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통지는 신고인의 신고서상 주소지로 하며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p.360]

<제11조>

제11조(지점등기기록의 정리 등) <삭제 예상; 2025. 1. 31.부터 시행 예상; 예규 개정안 확정 전>

->

제11조 <삭제>

제12조(보존기간)

휴면법인 목록, 제4조 제4항 및 제5조 제5항의 반송된 통지서, 제5조 제5항의 신고서철 및 제11조 제5항의 통지서는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

제12조(보존기간)

휴면법인 목록, 제4조 제4항 및 제5조 제5항의 반송된 통지서, 제5조 제5항의 신고서철은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제13조(보고)

지방법원장은 관내 휴면법인에 대하여 「상법」 제520조의2 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통지를 완료한 때와 「상업등기법」 제73조에 의한 해산등기 또는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별지 제6-1호 양식 및 제6-2호 양식)하여야 한다.

->

제13조(보고)

지방법원장은 관내 휴면법인에 대하여 「상법」 제520조의2 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통지를 완료한 때와 「상업등기법」 제73조에 의한 해산등기 또는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 양식 및 제5-2호 양식에 따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387]

| |
|--|
| 기타사항 |
| 1. 흡수합병해산 2000년 0월 0일 서울 중구 00로 0 00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 2000년 0월 0일 등기 동일폐쇄 |

->

| |
|---|
| 기타사항 |
| 1. 흡수합병해산 2000년 0월 0일 서울 중구 00로 0 00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 상업등기법 제4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 2000년 0월 0일 등기 동일폐쇄 |

[p.396]

<1. /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542호 -> 1823호

[p.400]

<(3) 기타 / 2번 째 단락 / 선례번호 변경>

상업선례 200705-2 -> 2-82

[p.405]

<4. 동시신청 등 / 2번째 단락 추가>

->

동시신청할 관할등기소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등기예규 1823호)

| Case | | 관할등기소 |
|---|---|-----------------------|
| 甲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乙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甲 회사 존속) | | 甲 또는 乙 회사의 관할등기소 |
| 甲 회사를 분할하여 乙 회사와 丙 회사를 각 설립하고 甲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乙 회사와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乙 및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 |
| | 甲과 乙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甲과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乙 또는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 |
| | 甲,乙,丙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 乙 또는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 |
| 甲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乙 회사와 丙 회사를 각 설립하고 甲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 | 甲 또는 乙 또는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 |

[p.407]

<(3) /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542호 -> 1823호

[p.409]

| |
|--|
| 기타사항 |
| 1. 회사분할 2000년 0월 0일 일부를 분할하여 인천 중구 중앙로 345 을 주식회사를 설립 2000년 0월 0일 등기 |

->

| |
|---|
| 기타사항 |
| 1. 회사분할 2000년 0월 0일 일부를 분할하여 인천 중구 중앙로 345 을 주식회사를 설립 상업등기법 제4조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 2000년 0월 0일 등기 |

[p.447]

<1,2) /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536호 -> 182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6호, 시행 2014.11.21]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5.01.20 [등기예규 제1826호, 시행 2025.01.31]

[p.448]

<2번째 단락 / (ㄱ)>

(ㄱ) 신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각 신 본점 소재지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수소법원의 등기촉탁

->

(ㄱ) 새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각 신 본점 소재지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수소법원의 등기촉탁

[p.449]

-> 부칙 삭제

[p.575]

<2번째 단락 /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537호 -> 1827호

[p.578]

<2. / 예규번호 변경>

등기예규 1537호 -> 1827호

[p.586] <박스 예규 안>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개정 2013.12.24 [등기예규 제1507호, 시행 2014.01.01]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개정 2025.01.02 [등기예규 제1818호, 시행 2025.01.02]

<2.-가>

가. 설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 「주택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동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장주택조합

(2)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임대주택조합

(3)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임의적 단체

->

가. 설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한 직장주택조합

(2) 삭제(2025.01.02. 제1818호)

(3)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임의적 단체

[p.586~587]

나.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 「주택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2)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

->

나.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 「주택법」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 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협회

(2) 「도시개발법」 제13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

(4) 「주택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같은 법 제76조제5항 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음)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에 따라 설립된 임대사업자협회 및 주택임대 관리업자협회

<부칙>

-> 삭제

[p.698]

<1. / 1번째 단락 다음에 삽입>

->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비송 45조).

[p.699]

<4번째 단락>

대위허가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채권자가,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비송 50조 1항, 2항).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비송 21조).

->

대위허가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채권자가,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비송 50조 1항, 2항).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비송 50조 3항).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비송 21조).